

조사유형 및 참고사항

○ 조사유형

- 무단전출·전입자 또는 거짓·부실신고자 등
- 집단거주시설지역의 거주자, 노숙자,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
-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

-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았고, 거주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·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
 - 이 경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고·공고 후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사항은 주민등록 전산기록에 남겨두고 주민등록 사망말소자로 정리
-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(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로 등록된 경우, 매화장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)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사망 말소자로 직권말소 조치(원인일자 ; 매화장신고서 등의 사망일자, 주민등록말소일자 ; 주민등록사망말소 정리일자)
 - 이 경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일자와 주민등록상 사망일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 전산기록의 사망일자와 말소일자는 그대로 남겨두고,
 -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와 주민등록 전산기록의 사망일자가 일치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된 사망일자를 주민등록상 전산기록에 추가하여 직권입력 조치

-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

※ 거주자 : 국외이주신고를 취소하도록 안내문 통보

※ 비거주자 : 시군구에서 일괄 취합하여 거주여권 발급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

※ 읍면동(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출국여부 조회) → 읍면동
(출국한 경우 시군구로 명단통보) → 시군구(거주여권 발급여부 조회
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읍면동에 회신) → 읍면동(재외국민
주민등록 정리)

○ 참고사항

< 일제정리 참고사항 >

- 전 세대 호별 방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확인서명
- 타 세대원 또는 통장이 확인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
 - 해외근무자, 수감자, 군인, 원격지 근무자 등
- 특히, 면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
 - 제3자의 무단전출·허위전입 의심자 등 사실조사 요청된 경우
- 위장전입 의심자
 -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한 자
 - 개발예정지, 재개발지역 고시 이후 전입자
 - 무단전출 의심자로서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
- 무단전출 의심자 : 정상 전입신고 후 거주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자